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27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1.

발의자 : 설훈 · 김영진 · 이석현

이용득 · 조승래 · 오영훈

유은혜 · 김상희 · 안민석
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움.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자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).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) ① 정부는 기본계획
및 시행계획을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
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
한다.

③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
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2항
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
한다)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6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</u></p> <p><u>의 국회 제출 등) ① 정부는</u></p> <p><u>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광역</u></p> <p><u>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</u></p> <p><u>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</u></p> <p><u>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</u></p> <p><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</u></p> <p><u>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</u></p> <p>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</u></p> <p><u>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</u></p> <p><u>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</u></p> <p><u>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</u></p> <p><u>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</u></p> <p><u>제2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</u></p> <p><u>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</u></p> <p><u>정한다.</u></p>
제7조(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 의 수립) ① <u>광역시장·도지사·</u> <u>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</u> <u>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</u>	<p>제7조(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 의 수립) ① <u>시·도지사-----</u> ----- -----</p>

<p>라 5년마다 광역시·도·특별자치 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(이하 “시· 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